



제 426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한국김산업진흥공사 설립〉

■ 김원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221호)

2025. 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최 선 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한국김산업진흥공사 설립	3
[참고자료]	1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원이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4. 29.

3. 회 부 일 : 2025. 4.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화의 촉진 및 부가가치의 제고를 통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우리나라 김은 최근 세계적인 인기를 끌며 2023년부터 2년 연속 연 수출액 1조원을 달성하는 등 역대 최고 수출기록을 세우며 ‘K-푸드’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해양수산부는 김산업의 진흥을 위해 지난 2022년 김산업 전문기관으로 (재)목포수산물식품지원센터를 지정하여 관련 연구개발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김산업의 종합적인 연구개발 및 수출 확대를 위한 별도의 국가기관 설립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마른김 업체의 82%가 상시직원 10인 미만의 영세한 사업장으로, 소규모·영세 업체가 많은 특성상 품질향상 및 생

산 자동화를 위한 투자 여력이 부족한 실정임. 또한 온난화로 인한 수온 상승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김의 종자개발 및 신품종 개발이 아직 미흡한 상황임. 수출시장 역시 미국과 일본 위주로 편중되어 있어 장기적 관점의 수출확대 전략 수립 및 실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옴. 아울러 생산지역의 심각한 고령화로 인한 종사자 확보 및 전문인력 훈련 및 양성도 요구되는 실정임.

이에 김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수립 및 사업추진 등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한국김산업진흥공사 설립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김의 부가가치 및 경쟁력을 제고하여 김산업 진흥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한국김산업진흥공사 설립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김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수립 및 사업추진 등을 위하여 ‘한국김산업진흥공사’를 설립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등).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u>제10조의2(한국김산업진흥공사의 설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김산업 진흥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김산업진흥공사(이하 “김산업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u> <u>② 김산업공사는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u> <u>③ 김산업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u> <u>1.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개발</u> <u>2.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 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연(出捐), 투자 유치 지원</u> <u>3. 김과 김가공품의 품질 향상 및 신제품의 연구·개발</u>

4. 김과 김가공품의 생산 기술 개발 지원 및 품질관리
 5. 김과 김가공품의 국내 소비 촉진 및 수출 확대에 관한 사항
 6. 김산업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조사·연구 및 모니터링
 7. 김산업 클러스터 구축지원 및 지방자치단체 협력사업
 8. 김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9. 김과 김가공품의 국내외 확산을 위한 홍보 사업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과 김산업 진흥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 ④ 국가는 김산업공사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 각호의 김산업공사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김산업공사에 대하여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 ⑥ 김산업공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⑦ 이 법에 따른 김산업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김산업진흥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신 설> <신 설>	⑧ 그 밖에 김산업공사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벌칙 제28조(과태료) 제10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김산업진흥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나. 검토의견

- 김은 우리나라의 전체 수산물수출품 중 약 32.9%(2024년 기준)를 차지하여 여러 수출품목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김 수출액이 2012년 2억 3,100만 달러에서 2024년 9억 9,700만 달러로 증가하는 등 수산물 수출확대에 기여하고 있음.

[수산물수출품 중 김이 차지하는 비중]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김수출액 (A)	2.31	2.52	2.74	3.05	3.53	5.13	5.26	5.79	6.00	6.92	6.48	7.93	9.97
수산물수출액 (B)	23.6	21.5	20.7	19.2	21.3	23.3	23.8	25.1	23.1	28.3	31.5	30.0	30.3
비율(A/B)	9.8	11.7	13.3	15.8	16.6	22.0	22.1	23.1	26.0	24.5	20.6	26.4	32.9

*자료: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김 및 김산업의 진흥 및 관련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수산물과학원 해조류연구소¹⁾에서 국가 차원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다만, 동 연구소는 김 외에도 매생이, 다시마·미역 등 갈조류·패류 육종 등에 대한 연구도 함께 수행하고 있고, 주로 김의 품종개발 및 유전자원 확보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어 김의 가공기술, 김 양식장 환경관리, 위생안전 등 분야 연구 등 김산업의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연구는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그 밖에 해양수산부는 현행법 제10조²⁾에 근거하여 김산업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있으나, 각각 김 제품 연구·개발이나 수출 마케팅 전략 연구 등 분야별 연구·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어 김 산업과 관

1) 국립수산물과학원 해조류연구소 김육종연구실

-조직·인력: 연구사 5명

-담당업무: 김 품종개발 및 산업화, 김 국유품종 보급 및 사후관리, 김 유전자원 보존 및 관리 등

2)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김산업 전문기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김과 김가공품 등 김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을 통해 김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김산업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김 제품의 품질 향상 및 신제품 연구·개발
2. 김 제품의 식품안전성 확보에 관한 연구
3. 국내 소비 촉진 및 수출 확대에 관한 사항
4.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통계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기관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련된 연구개발 및 수출 진흥, 정책 개발 등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

[김산업 관련 주요 연구기관·전문기관 현황]

구분	수과원(해조류연구소) * 해수부 소속기관	(재)목포수산물식품지원센터 *전문기관 지정('22.12.)	(사)한국수산물무역협회 * 전문기관 지정('24.7.)
인원	10명 (김 전담인력 4명)	23명 (김 전담인력 8명)	14명 (김 전담인력 3명)
주요 업무	○ 해조류 양식기술 연구 ○ 해조류 신제품 개발 및 산업화 ○ 해조류 유전자원 보존 및 관리연구 ○ 해조류 생산성 향상 및 산업적 이용 확대방안 연구	○ 김 제품의 품질향상 및 신제품 연구·개발 ○ 김 제품의 식품안전성 확보에 관한 연구 ○ 국내 소비 촉진 및 수출 확대에 관한 사항	○ 수산물 소비·수출 장려 등을 위한 전시회 개최·참가 등의 사업 ○ 수산물 수출입 시장조사, 해외홍보 및 공동 시설에 관한 작업 ○ 수출입 수산물의 거래 질서 확립에 필요한 사업 ○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위탁하는 사업
전문 영역	○ 양식기술, 신제품 개발	○ 김 제품 연구·개발	○ 수출 마케팅 전략 연구
비고	○ 김 전담인력 증원 요구 미반영 : ('22) 3 → 13명 / ('23) 3 → 10명 / ('25) 4 → 10명 요구	○ 전문기관 국비 예산요구 미반영 : ('23) 4 → ('24) 10 → ('25) 6 → ('26 요구) 3억 * (목포시 예산 10억 지원)	○ 김산업 전문기관 신규 지정('24년 7월) - 예산요구 : ('26) 3억

자료: 해양수산부

□ 이러한 필요를 바탕으로, 과거부터 김산업 관련 기관 설립을 위한 정책적·입법적 논의가 있어 왔음.

그 경과를 살펴보면, 제21대 국회(2020년 11월)의 김산업법 제정

논의 시 국가주도 김연구소의 설립이 논의된 바 있고, 2022년 8월 발의된 「김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의원 대표발의, 제2116967호)의 경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김산업연구소를 설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음. 이후 22대 국회에서 ‘국립 김산업 진흥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김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 제2200984호)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 중임³⁾.

이러한 입법적 논의와 함께 국립수산물과학원에 김연구소를 설립하는 등의 방안도 지속 논의되어, 2020년 11월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국립수산물과학원 내 김연구소 설립방안 마련이 논의된 바 있고,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국립수산물과학원에서 김연구센터 설치 및 전담인력 증원을 요구한 바 있으나 재정당국 등과의 협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아니하였음.

- 개정안은 ‘한국김산업진흥공사’를 설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김산업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수립 및 사업추진 등 총괄적 역할을 수행토록 하려는 것으로, 김산업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육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측면이 있음.

이와 관련, 현재 김이 전체 수산물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국립수산물과학원의 김 전담인력(4명)이 많지 않고, 현재 선정되

3) 과거 개정안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등에서는 국립수산물과학원 등 기존 기관에서 관련 연구를 수행할 수 있고, 기존 김산업 전문기관 등과 역할의 유사·중복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김산업연구소를 설립하는 내용(김승남의원안)에 대해서는 「과기출연기관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기된 바 있음.

어 있는 전문기관의 인력을 포함하더라도 김과 관련된 종합적인 연구 및 정책개발·지원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어, 이를 총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을 창설하려는 개정안에는 그 입법의 의의가 있다고 보여짐.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의 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1) 우선 개정안은 여러 수산품목 중 김이라는 특정 품목을 위하여 별도의 공사를 설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필요성과 효과를 검토함에 있어 공사의 설립이 다른 수산품목에 대한 지원 정책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현재 김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국립수산물과학원 및 그 밖의 전문기관과의 관계에서 업무중복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능 조정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2) 아울러 개정안은 기관의 유형을 공사의 형태로 하고 있는데, 통상 공사는 대부분 자본금이 있고 그 업무에 영리적 성격이 있어 본질상 상법상 회사, 특히 주식회사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됨⁴⁾.

그런데 개정안의 경우 공사를 설립하면서 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고, 자본금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수행 사무가 김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개발, 김과 김가공품의 품질향상 및 신제품 연구·개발, 소비촉진 및 수출 확대, 생산 기술 개발 지원 및 품질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등 비영리적인

4)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2024.5., p.534

업무를 위주로 구성되어 있음.

- 그 밖에 법체계적으로 공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공사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개정안의 경우 김산업 전반을 규율하는 기존 법률을 통해 공사를 설립하고 있는 차이가 있음.

따라서, 개정안에서 설립하려는 한국김산업진흥공사가 공사의 일반적인 형태에 부합하는지 여부 및 이 같은 종합적인 연구·진흥기관을 설립함에 있어 기관의 형태를 공사로 할지, 아니면 과거 개정안에서 제시된 바 있는 ‘진흥원’이나 ‘연구소’의 형태로 할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표] 해양수산부 소관 공사와의 비교

구 분	개정안(한국김산업진흥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항만공사
근거법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한국해양진흥공사법	항만공사법
법인격	법인	법인	법인
자본금·출자 관련	- *국가가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 가능(안 제10조의2제4항)	○ 자본금 5조원, 정부 등이 출자(제5조) ○ 공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제6조) ○ 손익금의 처리, 자금차입, 사채발행, 상환보증 등 규정(제13~15조)	○ 국가, 지자체가 출자 가능(제6조) ○ 손익금의 처리, 자금차입, 사채발행, 상환보증 등 규정(제32~35조)
준용규정	○ 민법(재단법인 관련 규정) 준용(안 제10조의2제6항)	○ 공공기관운영법 및 상법(주식회사에 관한 규정) 준용(제9조)	○ 공공기관운영법 준용(제2조)
수행업무·사업	○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	○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에 대한 투자	○ 항만시설의 신설·개축·유지·보수 등 공사의 시

구 분	개정안(한국김산업진흥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항만공사
	개발, 투자 또는 출연(出捐), 투자 유치 지원 ○ 김과 김가공품의 품질 향상 및 신제품 연구·개발, 생산 기술 개발 지원 및 품질관리, 국내 소비 촉진 및 수출 확대에 관한 사항 ○ 김산업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조사·연구 및 모니터링 ○ 김산업 클러스터 구축지원 및 지방자치단체 협력사업 ○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 김과 김가공품의 국내외 확산을 위한 홍보 사업 ○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과 김산업 진흥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 해운항만사업자에 대한 각종 채무보증, 입찰보증 및 계약이행보증 ○ 해운항만업 관련 채권·주식의 매입 및 중개 ○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취득·관리·처분·수탁 ○ 해외항만개발사업 및 해외항만물류사업에 대한 투자, 채무보증 ○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의 업무 ○ 운임선도거래 시장 운영 ○ 해운항만물류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 해운항만사업자의 해외물류시장 투자 등에 대한 컨설팅 ○ 업무 관련 조사·연구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위탁업무 ○ 정부시책에 따른 보조금 지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행 및 경비·보안·관리·운영사업 ○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항만재개발사업, 마리나항만시설 조성·관리·운영사업, 물류시설운영업 ○ 국가·지자체 위탁사업 ○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관리·운영사업 ○ 사업 관련 조사·연구·기술개발·인력양성 ○ 항만이용자를 위한 근린생활시설·복지시설 건설·운영 ○ 남북 간 교류협력사업 ○ 여수세계박람회 계승·기념·사후활용 등 ○ 기타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사업 관련 부대사업 실시나 출자·출연

□ 관련 부처 등 의견으로, 해양수산부는 김산업의 중요성 및 핵심 수출품목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고려할 때 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임.

다만, 공사 설립의 경우 공공기관 지정을 위해서는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른 지정 조건⁵⁾을 충족해야 하고, 별도 법률로 설립 근

5)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정원 300인 이상, 총수입액 200억원 이상 / (기타 공공기관) 정원 300인 미만, 민간기업과의 경쟁력을 고려해 자율경영 필요성이 높은 기관

거를 마련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현재까지 특정 품목·품종을 위한
공사 설립 사례가 없고 별도 공사 설립 시 행정상, 재정상 효율을
저해할 가능성⁶⁾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기존에 발의되거나 검토된 바 있는 ‘국립 김산업진흥원’(박지원의원
안) 및 김 업종별 수협 신설안 등을 포함해 김전문기관 설립을 다
각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422

6) 기획재정부도 특정 품목 진흥을 위한 별도 기관 설립은 행정적·재정적 효율을 저해하고, 이전
에 동일·유사한 설립 사례가 없으며, 다른 수산물 진흥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
는 의견임.

참고 1

국립수산물과학원 해조류연구소 현황

* 위치 : 전남 해남군 화원면 시아로 615

□ 해조류연구소 주요 기능

- 해조류 양식기술 연구
- 해조류 신제품 개발 및 산업화
- 해조류 유전자원 보존 및 관리연구
- 기후변화대응 해조류 생산성 향상 및 산업적 이용 확대방안 연구

□ 정원

구분	계	연구직			일반직
		소계	연구관	연구사	
정원	10	8	2	6	2
현원	10	8	3	5	2

* 기관장 1, 연구총괄 연구관1, 김연구 4, 그 외 해조류 3, 행정 1, 청사 및 시설관리 1

□ 2024년 수산물과학시험 연구 과제별 예산

구분	과 제 명	예산 (백만원)	연구기간
	계	1,290	
경상 (3)	김 우량품종 개발 및 산업화 연구	340	'21~'25
	녹조류 매생이의 지속가능한 양식기술개발	200	'22~'25
	김 황백화 발생원인 및 피해저감 연구	750	'24~'26

□ 주요 연구성과

- 김 국유품종 품종보호권출원 및 보급 → 김 수출증대 및 고부가가치 산업화
- 미역 국유품종 품종보호권출원 및 보급 → 생산성 증대
- 다시마 국유품종 품종보호권출원, 용다시마종자 분양 → 양식 저변 확대
- 해조류 양식품종별 양식매뉴얼 발간 → 양식 품종 다양화

	
2008 2009 2010 2015	
2016 2018 2019	
해조류 양식매뉴얼 및 홍보자료 발간	한국의 해조류 품종보호권 등록품종

□ 김 관련 연구조직 및 연구성과

○ 김 연구조직

- 김육종연구실(연구관1명, 연구사3명)에서 신품종 육종 및 보급 기능 일부 수행

실명	인원	담당업무
김 육종연구실	연구관 1	김 품종개발 및 산업화 김 국유품종 보급 및 사후관리 김 유전자원 보존 및 관리
	연구사 1	
	연구사 2	
	연구사 3	

* 고수온내성 품종개발, 질병연구, 김 양식장 환경관리, 위생안전관리 연구자 부재로 인력 확충 필요

○ 김 관련 연구성과

- 김 품종개발 현황

구분	합계	방사무늬김	잇바디돌김	모무늬돌김	비고
출원	19	15	3	1	출원 32개 품종 중 58% 점유
등록	14	13	1	-	등록 26개 품종 중 54% 점유

종명	방사무늬김															잇바디돌김		모무늬돌김	
육종법	선발			돌연변이	선발								돌연변이	선발					
종명	수과원 104호	수과원 105호	수과원 106호	전수 1호	수과원 108호	수과원 109호	수과원 110호	전수 2호	수과원 111호	수과원 112호	수과원 114호	수과원 115호	수과원 116호	수과원 117호	수과원 118호	수과원 401호	수과원 402호	수과원 501호	
형태																			
특징	속성장	고품질	속성장	항산화	속성장	속성장	속성장	속성장	속성장	속성장	속성장	속성장	속성장	속성장	속성장	속성장	속성장	속성장	
출원	2013	2014	2015	2015	2016	2017	2017	2017	2018	2018	2019	2019	2020	2020	2021	2019	2021	2022	
등록	2015	2017	2019	2017	2018	2019	2019	2021	2022	2022	2022	2023	2024 (예정)	2023	2024 (예정)	2021	2024 (예정)	2025 (예정)	

- 김 국유품종 보급 현황

연도	대상품종	보급량(g)	실시수량(상자)	실시료(원)	계약(건)	점유율(%)
'17년	4품종	595g	59,500	3,570	21	2.0
'18년	7품종	3,200g	320,000	20,802	93	12.2
'19년	9품종	5,250g	525,000	50,376	120	20.4
'20년	12품종	10,748g	1,397,240	128,430	176	33.8
'21년	14품종	5,510g	964,250	80,965	110	18.4
'22년	16품종	5,345g	762,475	64,792	104	19.3
'23년	9품종	5,670g	831,250	79,222	119	18.9
'24년	9품종	6,442g	951,650	87,622	137	21.5

참고 2

(재)목포수산물식품지원센터 현황

* 위치 : 목포시 고하대로719번길 52

□ 센터 개요

- 설립목적 : 수산자원의 연구·개발, 기업지원 등 수산업 육성 및 가치 창출
- 면적 : 부지 14,775.7m², 건축 연면적 9,737m²
 - 연구동 : 3층 3,816m², 연구장비 127종 295대
 - 생산동 : 지하1층~지상2층 5,921m², 생산장비 52종 70대, 생산시설 16종
- 장비구축 : 연구장비 127종 295대, 생산장비 52종 70대, 생산시설 16종

□ 센터 연혁

- '07. 03. : 수산식품거점단지 조성사업 지정(해수부 1호)
- '15. 06. : 센터 개소
- '17. 03. : 지역특화(주력)사업 육성기업 지원사업 선정(산업통상자원부)
- '18. 03. : 전남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사업 선정(해양수산부)
- '18. 05. : 창업보육센터 지정(중소벤처기업부)
- '20. 05. : 식품(자가품질위탁)시험·검사기관 지정(식약처)
- '22. 12. : 김산업 전문기관 지정(해수부 제1호, 김제품 연구·개발 분야)
- '24. 05. : 부처협업 기반 AI 확산 사업 선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5. 02. :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한국인정기구)
- '25. 03. : 특화역량 BI 육성지원사업(지역거점형)선정(중소벤처기업부)

□ 조직 현황

- 현원 22명(정원 23명, 1센터장, 5개팀*)
 - * 경영기획, 품질안전, 생산지원, 기업지원, 김산업전문T/F
 - * 정원 외 인원(5) : 시 파견 1명, 위촉연구원 3명, 기간제근로자 1명
- 전문 연구인력 : 11명(박사 2명, 석사 6명)
 - * 김산업 전문 연구 인력 : 8명(1명 충원 예정)

□ 수산물식품산업 육성

- 김 품질 표준 확립 및 고도화(김산업 전문기관)
 - 고부가가치 상품개발, 건강기능성 물질의 상품화, 김의 생산·가공

전주기 표준화 시스템 구축

- 김 등급화 및 품질관리
- AI 기반 김 품질 등급 판별 솔루션 개발 및 실증
 - 사업기간 : 2024. 6. ~ 2026. 12.(31개월)
 - 사업내용 : 김 데이터와 AI를 융합하여 마른김 품질 등급 판별 AI 솔루션 개발 · 실증 및 현장 적용
- 목포어묵 육성
 - 공장규모 : 부지 5,610㎡, 연면적 2,828㎡(공장동 2,423㎡, 사무동 405㎡)
 - 사업내용 : 국산원료를 활용한 연육 및 반제품 생산·공급, 위생시스템 지원 등으로 어묵생산 품질 표준화

□ 식품 품질 · 안전관리체계 구축

-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 제144호)
 - 시험·검사 항목 : 식품(이화학, 미생물)
 - 주요내용 : 자가품질위탁검사 및 참고용검사(9대 영양성분 등)
-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추진
 - 인정분야 : 식품(화학시험) 및 미생물(생물학적시험)
 - * 식품 : 중금속 3종(납, 카드뮴, 비소), 미생물 : 3종(세균수, 대장균, 대장균군)
 - 주요내용 : 수산물 및 가공식품, 수출국에서 요구하는 공인 시험검사
 - 추진현황 :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한국인정기구 KT1263)
 - * 인정일 : '25. 2. 13.

□ 해양수산 창업보육 및 기업지원

- 전남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사업
 - 수산기업 발굴 및 육성, 수산창업 및 수출 지원 등
- 공동기술개발(상생협력 생산기술 개발) 사업
 - 식품기업의 상품화·제품화를 위한 식품신기술, 푸드테크 관련 종합 기술지원을 통해 기업 기술 경쟁력 확보
- 시제품제작, 제품제조 공정개발, 위탁가공 생산 지원 등

참고 3

(사)한국수산물무역협회 현황

□ 설립 목적

- 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정책에 호응하여 수산물 생산·가공 및 수산물무역의 건전한 발전과 협회 회원의 권익증진에 기여

□ 주요 연혁

- '86. 5. 1 한국수산물수출조합 설립
- '11. 1. 1 (사)한국수산물무역협회로 명칭 변경
- '21. 4. 7 수산물식품 수출 지원기관 지정(해수부 공고 제2021-643호)
- '21. 6. 22 한국 김 일본 수요자할당 주관기관 지정(해수부 고시 2021-126호)
- '24. 5. 9 마른김 및 조미김 할당관세 추천기관 지정(해수부 공고 2024-758호)
- '24. 7. 26 김산업 전문기관 지정(해수부 공고 2024-905호)

□ 주요 사업

- 수산물 소비·수출 장려 등을 위한 전시회 개최·참가 등의 사업
- 수산물 수출입 시장조사, 해외홍보 및 공동시설에 관한 사업
- 수출입 수산물의 거래질서 확립에 필요한 사업
-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위탁하는 사업

참고 4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17개) 현황

(‘25. 5월 기준)

유형	기관명	설립목적 및 주요 업무
준시장형 공기업(1)	해양환경공단	○ 해양환경의 보전·관리·개선사업 ○ 해양오염방제사업 ○ 해양환경·해양오염관련 기술개발 및 교육훈련 사업
준정부 기관(1)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선박의 안전확보를 위한 정부의 선박검사업무 대행 ○ 내항여객선 및 이용객안전을 위한 운항관리업무수행
기타 공공기관 (15)	국립해양박물관	○ 해양문화·해양산업 유산을 발굴·보존·연구·전시 등 ○ 박물관자료의 조사·연구 및 교육
	국립울진해양과학관	○ 해양과학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전시 및 교육 ○ 해양과학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 해양과학 관련 교원 연수 등 해양교육 전문 인력 양성
	해양수산 과학기술진흥원	○ 해양수산과학기술 정책수립 및 연구개발사업 기획·관리·평가 지원 ○ 해양수산과학기술 실용화 촉진 등 사업화 지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해양과 해양자원의 체계적 연구와 개발, 관리와 이용 ○ 해양분야 우수 전문인력 양성
	국립해양생물자원관	○ 해양생물자원의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교육 ○ 해양생물자원의 조사·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 ○ 해양생물자원 관련 국내·외 교류 협력 등
	한국해양조사협회	○ 해양정보의 품질관리, 항해용간행물의 간행 및 배포, 해양조사 기술연구개발 ○ 해양관측시설 및 영해기준점 유지관리, 해양조사기술자 교육훈련 등
	한국수산자원공단	○ 수산자원조성사업(인공어초·바다숲 조성 및 우량종자방류) ○ 수산자원조성 관리사업(총허용 어획량 조사 등)
	한국어촌어항공단	○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어장의 효율적 보전과 이용 ○ 어촌·어항·어장 관련기술의 개발·연구 및 정보화, 관광 활성화
	한국해양진흥공사	○ 선박, 항만터미널 등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에 대한 투자 ○ 선박, 항만터미널 등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 취득 차입금에 대한 채무보증 등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해양수산 관련 사업종사자의 교육·훈련 ○ 해양수산 기술훈련에 관한 국제교류 증진을 위한 사업 ○ 정부로부터 위탁한 해기사 등 국가자격시험의 관리
	부산항만공사	○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운영 ○ 항만배후단지의 조성 및 관리·운영 ○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시설조성 ○ 항만조성·운영 관련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의 위탁사업
	인천항만공사	○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운영 ○ 항만배후단지의 조성 및 관리·운영 ○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시설조성 ○ 항만조성·운영 관련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의 위탁사업
	여수광양 항만공사	○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운영 ○ 항만배후단지의 조성 및 관리·운영 ○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시설조성 ○ 항만조성·운영 관련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의 위탁사업

유형	기관명	설립목적 및 주요 업무
	울산 항만공사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운영 ○항만배후단지의 조성 및 관리·운영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시설조성 ○항만조성·운영 관련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의 위탁사업
	한국항로 표지기술원	○국가 설치·관리하는 부표류, 철탑등대, 등주의 제작수리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